

보도자료

可以, 对如时! 对是是 考则的好好

보도 일시	2022. 7. 7.(목) 조간	배포 일시	2022. 7. 6.(수) 09:30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 김연준(02-2100-2950)
<총괄>	은행과	담당자	사무관 김기훈(02-2100-2953)

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「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」

주요 내용

- ①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**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**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, 대출·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합니다.
 - ※ 국정과제 37번「금융소비자 권익향상」세부과제
- ②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,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.
- ③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,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합니다.

1 추진 배경

- □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,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**시장금리**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·예금금리도 함께 상승중입니다.
 - 특히,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* 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 - * ('20.12월) 1.89%p \rightarrow ('21.12월) 1.96%p \rightarrow ('22.1월) 2.26%p \rightarrow ('22.5월) 2.12%p
- □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,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.

2 금리정보 공시 등 개선방안

< 기 본 방향 > -

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

금리정보 공시 개선

- 예대금리차 비교공시
- ㆍ대출금리 공시 개선
- 예금금리 공시 개선

금리산정체계 합리성·투명성 제고

- ·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
-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
- · 금리산정 자율점검 강화

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

- ·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시범운영
- ·개인신용평가 설명·안내
- ·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
- ①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 - 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(은행연합회 홈페이지)하고,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.
 -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**신규취급액 기준**으로 산출하며,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**대출평균**(가계+기업) **기준과 가계**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(신용점수 구간별)를 함께 공시할 계획입니다.
 - ②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 → 신용평가사 신용점수*로 변경합니다.
 - * 신용평가사(CB)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(예: 토스, 카카오페이) 등에서 상시확인 가능하나,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
 -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50점 단위*(총 9단계)로 공시할 예정입니다.
 - * (현행)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 → (개선) 신용평가사(CB) 신용점수 9단계
 - ③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 예·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(신규취급)도 추가 공시할 계획입니다.
 - * (현행) 기본금리, 최고우대금리 → (개선) 기본금리, 최고우대금리, 전월 평균금리

- ②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성·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 - ① 대출금리의 경우,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*합니다.
 - * (예)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절차,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(예: 업무원가, 리스크프리미엄 등)
 - ② 예금금리의 경우, 月 **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**을 점검하여 **기본금리에 반영***할 수 있도록 **정비**할 계획입니다.
 - * 시장금리 변동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 존재 →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
 - ③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합니다.
 - 은행별로 年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 하고,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
- ③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,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 - 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(혁신금융서비스)합니다*.
 - * 대출·보험상품 등과 달리 예금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상황
 - 소비자 편익과 함께 **리스크 요인**을 감안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**부가조건 부과***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.
 - * (예시) 공정한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,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
 - ② 소비자가 **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** 및 **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**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**사전 설명·안내***할 계획입니다.
 - * 신용정보법 개정('20년)으로 관련 권리가 신설되었으나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먼저 권리행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
 - ③ 은행별 **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공시**(은행연합회 홈페이지) 하는 한편, **소비자 안내**도 **강화**(年 2회 정기안내, 수시안내)하겠습니다.

3 향후 계획

- □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**최대한 신속**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 -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, **7월 금리정보**부터 **공시**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**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**합니다.
 -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 김연준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 김기훈(02-2100-2953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부국장 김형원(02-3145-8022)
		담당자	팀 장 이종진(02-3145-8030)





참 고

금리정보 개선방안 관련 Q&A

- 1.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는데?
- □ 은행은 단기로 조달하여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^①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^②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
 - 이에 따라 **금리상승기**에는 통상 **장단기금리차**가 커지면서 **예대** 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
 - ※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, **대출은 변동금리 비중**이 높고 **예금은 고정금리 비중**이 높아 시장금리 상승시 **금리반영 시점 차이**로 예대금리차가 확대
- □ '21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평균금리 (+91bp)와 예금금리(+108bp)가 모두 비슷하게 상승
 - 다만,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 및 기업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음

< '21.6월 이후 은행권 금리 및 예대금리차 추이*(%, %p) >

	'21.6월	'21.12월	'22.1월	'22.5월	('21.6월比)
국고채3년	1.30	1.80	2.06	3.02	+172bp
저축성수신금리	0.94	1.70	1.65	2.02	+108bp
대출평균금리	2.77	3.25	3.45	3.68	+91bp
가계대출금리	2.92	2 3.66		4.14	+122bp
평균 예대금리차	1.83 1.55 1.80		1.66	1.66 △17bp	
가계 예대금리차	H금리차 1.98 1.96		2.26	2.12	+14bp

^{*} 모든 통계는 신규취급액 기준

2. 예대금리차 비교궁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닌지?

- □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
- □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^①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, ^②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
 - 아래 예시에서, 인터넷은행 B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평균 예대금리차는 은행 A에 비해 크나,
 - ^①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, ^②평균 신용점수가 은행 A 대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

은행	구분	신용점수별 금리						
		1000~ 951	950~ 901	중략	650~ 601	600 이하	평균금리	평균 신용점수
은행 A	대출금리	3.70	3.95	중략	8.92	10.93	4.57	930점
	예대금리차	2.70	2.95		7.92	9.93	3.57	
인뱅 B	대출금리	3.53	3.84		8.55	11.02	5.10	820점
	예대금리차	2.33	2.64		7.35	9.82	3.90	

3. 금리정보 공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

- □ 7월 신규취급액부터 공시할 예정
- □ 공시체계 개편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 예정

- 4.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데 CB사 신용점수로 변경시 실익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?
- □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하여 금리 등을 산정함
 - 이 때, 은행이 **자체 산출**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**사전에 확인** 하기 어려우므로 **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음**
 - 반면,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만큼,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효과 기대

- 5.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,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?
- □ 금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함이 아님
 - 금리산정에 관한 **은행의 자율성**은 보장하되, **합리적인 절차 및**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- <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방향 > -

- (업무원가) 원가(인건비·물건비) 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하여 대출 종류·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*
 - * 대출 종류 등과 무관하게 단일 원가율 적용시 일부 대출의 원가가 과다 계상될 우려
- (리스크프리미엄*)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 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 활용[(현행) 은행채 → (개선) 예금·은행채 혼합, 코픽스 등]
 - * 리스크프리미엄 = 조달금리 대출 기준금리 (조달금리 과다 산정시 리스크프리미엄 확대)
- (자본비용*) 자본비용 산정시 경영계획상 목표 ROE 또는 최근 실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비
 - *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